

2016. 11. 1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 살려야
국방부 ·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발행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별첨 | 한민구 국방부 장관 고발장 전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1. 미일 MD 편입,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6월 한미일 해상 MD(미사일방어체제) 훈련,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절차임.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미일 MD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¹ 즉, MD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음.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 이뤄지자, 미국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음.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음.
-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함. MD 편입도 아니라고 함.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임.
- 한국이 한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현실로 만들 것임. 그 결과는 군비경쟁 심화,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길은 결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군사적 대응책에 있지 않음. 이것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일 뿐임.

2. 일본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꼴

-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인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 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음.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음.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음. 그리고 현재 해석을 넘어 평화헌법 자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1 2015. 4. 3.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2013. 6. 24.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임. 이는 한국이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임.
- 2015년 일본 안보 법제 통과 후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이 영향을 미치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음.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통상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본에게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습득,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임. 즉,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한국 스스로 터주는 꼴이 됨.
- 사실 한국군은 일본 재무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이미 자위대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해 왔음.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음.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훈련도 최근 계속 해왔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자위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3.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추진 절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도 반민주적인 행태가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이로부터 12일 만에 국회와 어떤 논의도 없이 협정 재추진을 발표함. 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이 협정을 추진해버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언급함.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를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과는 다른 것임.

4. 다음 순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다음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임. 한국군과 일본군 간 탄약과 같은 물자, 식량, 연료 등의 물품이나 용역 등 상호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논의되었음. 자위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시 군수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직결되는 협정임. 이 역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보장해 주는 협정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 :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1. 협정 불인정 선언

- 만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는 11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야당은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해야 함. 박근혜 정부는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선언. 이는 향후 대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함.



2012년 6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 만약 여당의 반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다시 발의해 의결해야 함. 최종 서명 이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소추 의결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적 조치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힘써야 함.

3. 국무총리실 향의 방문

- 11월 22일(화)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되기 전, 국무총리실 향의 방문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필요 있음. 박근혜 대통령 재가가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무회의 전 국무회의장이나 국무총리실 향의 방문을 통해 야당의 반대 의견과 국민적 우려를 명확히 밝혀야 함.

- 2012년 민주통합당은 본 서명이 예정되어 있던 날 국무총리실을 향의 방문해 협정 체결 반대 의사를 전달했으며, 예정된 서명 시간을 30분 남겨두고 실제 협정은 무기한 연기됨.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 이종걸 최고위원 등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다.

4.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 협정 체결 과정과 그 결과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서명 이전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 중요함.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의 보호 절차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지형을 급변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특히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범국가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로 치닫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이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5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위반됨.
-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를 요구되는 사안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
- 사상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논의되고, 100만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거센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는 협정임. 그럼에도 국방부·외교부 장관이 국회 동의도

없이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국가 간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을 졸속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

- 추진 방식 또한 갑작스럽고 일방적임. 국방부는 여론 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북핵 위기만을 강조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MD나 일본 재무장과는 무관하다'는 무성의한 주장만을 거듭함. 사회적 합의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음.
- 국방부·외교부 장관, 국무총리는 직권을 남용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고 있음.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임.
- 따라서 얼마든지 탄핵 소추가 가능함.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내용상 조약으로,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 2012년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다.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 2012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 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즉시,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함.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함.
- 여소야대의 국회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국회'가 되도록 의결이 가능함. 다만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의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렇다면 국회법상의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간주됨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기 위해 어떻게 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하여 의견을 받는 것도 가능함.
- 만약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임.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든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하기 쉽지 않을 것임.
- 2013년 민주당 의원 전원은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
- 조달협정에 대한 심판은 각하되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은 각하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교섭단체나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만 한정해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인들은 교섭단체를 이루는 정당의 국회의원 전원으로 제3자 소송담당의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룰 수 있는 심판청구인 자격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음.

"정부가 국회 조약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012년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 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다.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다." - 2012년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책자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

발행일 2016. 11. 18

발행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별첨자료>

고 발 장

- 고 발 인 1. 김삼열(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2. 송병일(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3.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4.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5.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외 별지목록 14,828

고발인들의 대리인 <별지> 참조

피고발인 한 민 구

국방부장관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들은 시민사회단체이고,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입니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이른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추진 경위

가. 2012년 ‘밀실험정’ 추진과 좌초의 경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합니다}은 국가 안보에 무척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보호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하 ‘2012년 협정’이라 합니다)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큰 논란을 빚으며 협정 추진을 중단하고(증 제1호증 조선일보, “반감 큰 韓日협정, 막판 허둥지둥 연기” 참조), 그 과정에서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의 보직 사의, 김태호 청와대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의 사임, 외교통상부의 실무 협상담당 조세영 동북아 국장의 교체 등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나. 2016년 재추진 경위

국방부는 2016. 10. 27. 이 사건 협정의 논의 재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앞으로 일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이라는 것입니다(증 제2호증 국방부 2016. 10. 27. 보도자료 참조).

피고발인은 2016. 10. 28.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고자 공개했다” 고 밝히면서도(증 제3호증 연합뉴스 “한민구 “日과 안보협력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 참조), 고속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논의 재개를 밝힌 지 3일 만인 2016. 11. 1. 일본 동경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차 협의” 를 개최하고(증 제4호증 국방부 보도자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차 협의 결과” 참조), 일주일 여 만인 2016. 11. 9.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 를 개최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뉴스 “[종합]한·일, 9일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실무협의” 참조).

이에 2016. 11. 9.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을 국회의원 159인의 찬성으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안은 ① 피고발인이 2016. 10. 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협정 체결에 대하여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같은 달 14.에도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여건 성숙이 필요” 하다고 답변하고도, 불과 13일 만인 같은 달 27. 국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이 사건 협정의 재추진을 결정하고, 실무협의를 강행한 것이 국민을 기망하고 무시하는 행위인 점, ② 이 사건 협정은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이며, 국가안보적 중대사안바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를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 ③ 이 사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켜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점, ④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첫째, 이 사건 협정 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어지러운 시국에 졸속으로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셋째,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이 사건 협정 체결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였습니다(증 제6호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 협정이 ‘안보에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2016. 11. 1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 절차에 나서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증 제7호증 뉴스1 “한일, 내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속전속결’ 논란 불가피”).

4. 이 사건 협정 체결의 위헌성

가. 이 사건 협정의 내용

(1) 2012년 협정 문안

이 사건 협정의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2012년 협정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는바 이 사건 협정은 2012년 협정의 내용의 골자를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협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증 제8호증의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영어 정보, 증 제8호증의2 위 협정 국문본 각 참조).²

2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www.mofa.go.kr/introduce/oranization/announcemen>)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ts/announcements/index.jsp?mofat=001&menu=m_70_20_4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234%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42821 접근일 : 2016. 11. 15.)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보안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 가.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자위대 법에 따라 방위비밀로 지정된 군사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Bouei Himitsu 防衛秘密, 또는 다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Gokuhi 極秘 또는 Hi 秘 그리고,
 - 나.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II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III급 비밀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일본국	대한민국	참고 : 상응하는 영문
Gokuhi 極秘 Bouei Himitsu 防衛秘密	GUNSA II-KUP BI MIL 군사 II급 비밀	SECRET
Hi 秘	GUNSA III-KUP BI MIL 군사 III급 비밀	CONFIDENTIAL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보안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허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괴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원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허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게 대한 개인보안허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보안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보안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괴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허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보안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 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허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 허가를 소지할 것
- 라. 개인보안허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원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 자. 개인보안허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즉, 위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장비, 기술의 형태” 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기준) 군사 2급 비밀 또는 군사 3급 비밀”³의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

3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타법개정된 것]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및 [별표1]에 따르면 “군사 II급비밀”이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집단안보결성 추진계획, 비밀 군사외교활동,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국가적 차원의 동원내용이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보충 이행 약정”,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시설 방문”,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시설의 보안”, “보관”,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과기”, “복제”, “번역”,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분실 및 훼손”, “보안 대표의 방문”, “비용”, “분쟁해결” 등 구체적인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준수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협정의 의미

(가) 미국의 MD체제 편입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라고만 합니다) 소속 전문가 3명이 2013. 6. 24. 공동으로 작성하여 미국 상·하원에 보고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탄도미사일방어 : 협력과 반대” 보고서(중 제9호중 CRS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 Cooperation and Opposition” (2013. 6. 24.))는 미국이 그간 MD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추진해온 사업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로서, 이들 국가와 협력해온 덕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MD체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차원의 준비 작업이 큰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이나 패트리엇(PAC-3) 등의 요격미사일을 활

포함된 동원계획,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간첩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내용, 암호화 프로그램, 군용 암호자재가 이에 해당하고, “군사 III급비밀”이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사단(해군의 함대, 공군의 비행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급 이상 부대의 전체 편제 또는 장비 현황, 연대급 이상 증편 계획, 정보부대 또는 기무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장관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대, 정보부대 및 기무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 종합적인 방위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사단급 이상 통신망 운용지시 및 통신규정, 전산보호 소프트웨어, 군용 음어자재(陰語資材)가 이에 해당합니다.

용해 잠재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를 한층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게 기본 전제로, 현재 상황에서 미사일을 감지할 레이더와 요격수단을 구비하는 기본적인 준비는 끝마쳤고, 함께 운용할 국가 사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 보고서가 지목하는 핵심 과제는 특히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을 통해 잠재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동으로 요격하려면, 일본 측 레이더가 확인한 미사일 궤적이 나 향로를 실시간으로 한국 측 PAC-3 요격미사일 부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지부터 격추까지 수 분 사이에 진행되는 작업 특성상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의 시스템 연동은 필수적입니다.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이를 가능케 하는 조약을 이미 체결한 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2012년 협정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고, 한국 국내정치 문제로 이 협정에 서명하지 못해 MD체제 공동 구축도 난항에 빠졌다고 곳곳에서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 구축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공식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강하게 의식한 조치라는 점 역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중 제10호증 주간동아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MD(미사일방어) 구축 사전조치였다” 참조). 위 보고서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사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경우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궤도로 날아오는 데다 수 분 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3국 미사일방어 공조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CRS는 2015. 4. 3.자 보고서에서도 “2014년 12월 일본과 남한이 서명한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은 미국과의 3자 방어 협력에 있어 중요한 발전이었지만, 이는 동경(일본)과 서울(한국)이 2012년 한국내 정치적 반발로 협상이 무산되기 전에 거의 성사할 뻔 했던 협정보다 덜 포괄적이

단”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중 제11호중 CRS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 Cooperation and Opposition” (2015. 4. 3.)). 즉, 2012년 협정의 뒤를 잇는 이 사건 협정이 MD체계 구축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2013. 7.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 한반도 옴디 이행전략으로, 1단계는 패트리엇미사일 배치 단계로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용, 2단계는 한-미-일 옴디 체계의 통합을 증진시키면서 패트리엇미사일을 업그레이드, 이른바 ‘상호운용성’ 확장 단계, 3단계는 준중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 또는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엑스밴드(AN/TPY-2)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다. 1단계는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 2단계를 진행중이다.” 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미국은 이 사건 협정은 2단계에 해당하는 한-미-일 옴디 체계의 통합에 필수적인 것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⁴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한·미·일 MD협력은 2012년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으로 공식적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에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평가하는 등,⁵ 2012년 협정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협정은 미국 주도의 MD 체계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종대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또한 “한일 군사협정의 핵심조항은 군사, 특히 미사일방어 분야에서 일본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한·미·일 삼국간의 미사일 방어 협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핵심 군사

4 Advance Questions for Lieutenant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USA Nominee to be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2013. 7. 30.

5 엄상윤, “한미일 MD협력의 양상과 전망”, 국가전략 2014년 제20권 제2호, pp.41-68

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의 군사협력을 받아내겠다는 이중포석이 바로 이 협정의 핵심 노림수다. 따라서 이 협정은 ‘군사에서의 FTA’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도 각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이 반드시 보호받고자 하는 절실하고도 중요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협정을 체결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증 제12호증 김종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 번째 한반도 정벌을 위한 서곡”).

(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초석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2013년 CRS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미일간 공동의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에 일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의 제한을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이라고 언급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헌법 개정 또는 재해석은 정치적으로 논쟁을 초래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 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증 제9호증 참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와 방위력의 증강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헌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개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개헌을 준비하고, 신안보법제를 마련하는 등 2차대전 이후 택하여 온 평화 헌법을 폐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헌법이라는 특수한 정치체제를 택한 이유는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법률 정비를 완료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 로 가는 ‘중대 일보’ 를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대한 국면인 것입니다.⁶

일본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11개 안보법 제개정을 통해 평시,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에 이르는 모든 경우에 북한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군 등의 무기보호, 미군이나 한국군에 대한 병참지원, 실종 미군수색, 주한 일본인 대피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9년 4월13일자 도쿄의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전문 ‘미·일·한 3자 안보협력에 대한 한일 관료와 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아베 노리아키 일본 외무성 미일안보조약 담당 부국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시민들을 소개할 수 있는 집결지, 피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이들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한) 항구와 공항 등의 정보뿐 아니라 자위대의 비행기나 함선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증 제22호증 한겨레 “‘위키리크스’ 2년전 폭로전문에 이미 암시”). 이에 비추어 볼 때, 한일간 정보공유는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는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있고, 또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2015년 안보 법제가 9월 달에 성립하고 10월 달에 열린 일본의 나카타니 방위장관과 그리고 한국의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38도선 이남에는 한국의 접근이 영향을 미치지만 38도선 이북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 유사사태가 되면 일본은 언제든지 한국에 다시 미국에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현재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에게 있어서 이 사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북한에 대한 진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증 제13호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6 유호근, 일본 집단 자위권의 확대와 역내 국제관계의 동학, 정치정보연구 19(1), 2016. 2., pp.185-208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 위협 요소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김종대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도 “그렇다면 이번 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의 과정 역시 자명하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 즉 준(準) 동맹의 성격으로 군사관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 미사일이 일본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 즉 한반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해야 일본이 안전하다는 점은 일본 내 많은 전략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주제였다. 한국 영토에서 일본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 출동하여 작전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펴야 한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를 필두로 한·미·일 군사작전을 완전히 융합하는 새로운 집단방위 구상이 그 배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고 하여, 이 사건 협정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에 초석이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증 제12호증 참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아베 정권은 지난해 안보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의 자위대 활동을 가능케 했다. 평화헌법 9조까지 개정된다면 협정 체결이 군국주의 부활의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된다. 북한 관련 정보 교류가 동북아 지역정보 교류로 확대되고 북한 붕괴나 중국 포위 등 군사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신냉전 구도를 촉진할 수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 협정 체결 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증 제14호증 국민일보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한일 군사협정 논의 중단돼야”).

(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대한 의혹

위 (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 체결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 현 정부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냉철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16. 10. 28.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0년 일본측의 요청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에 착수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⁷ 이러한 요청에 따라 실제 협상 체결 직전까지 간 것이 2012년의 상황이고, 한국이 2012년 6월 협정 체결을 보류하기로 한 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 국방부에 협정 체결을 재근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주한 일본대사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중 제15호증 파이낸셜뉴스 “정치 日대사 “한일 정보보호협정 언제든 체결 용의”), 일본 방위상은 2016년 6월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도 한국 국방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말하였고(중 제16호증 연합뉴스 “日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 중요” ... 韓, “여건 조성돼야” (종합)),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015년 8월 2년만에 열린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한국 국방부에 이 사건 협정에 대한 논의 재개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중 제17호증 세계일보 “2년여만에 마주한 한일 軍, 日 “정보보호협정 필요” 강력 요청).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튿날인 2016년 9월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기 체결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중 제18호증 연합뉴스 “日 방위상, 韓 국방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요청”). 이때마다 한국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본측의 요청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어떠한 사정 변경도 없으며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로 정국 혼란이 절정에 달한 2016. 10. 27. 이 사건 협정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사건 협정이 재개되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외교 소식통은 “올해 들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내년 1월까지) 안에 한일 GSOMIA를 체결하기 바란다는 희망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일에) 전달해온 것으로 안다” 고

7 <http://w3.assembly.go.kr/vod/jsp/vod/vod.do?cmd=vod&mc=337&ct1=20&ct2=346&ct3=04>에서 확인가능

밝히는 등 정부의 이 사건 협상 체결이 이토록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증 제19호증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협정 ‘속전 속결’ 가서명에 美희망 반영됐다”).

(라) 소결론

즉,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협정은 단순히 군사 정보의 공유에 수반되는 비밀 보호에 필요한 절차만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협정을 지지해 온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동북아 MD 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 상대방인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지는 평화 의무를 저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 유사 시 자위대를 한 반도에 진출시키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중대하게 변경시키고,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진하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점증시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 헌법 전문 및 평화주의 원리 위배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 함을,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함을 천명하고,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⁸ 평화적 통일과 멀어지게 하고,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8 한편 헌법재판소 2009. 5. 28. 자 2007헌마369 결정에서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은,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테러 등의 위해를 받지 않으면서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비록 헌법상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않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평화적 생존권이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전문과 제5조에 위반됨은 물론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적 식민 지배에 항거하고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선언한 3.1운동에 명백히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에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도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단행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헌법을 폐기하고 자위권 확보를 향해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다. 국회 동의권의 침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4. 가. (2)]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은 단순히 양국이 교환하는 군사기밀에 관한 정보의 관리에 대한 협정임을 넘어,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편입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확장을 가속화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안보 상황을 군비 경쟁의 확장 대결의 심화라는 방향으로 중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협정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국회의 동의는 2012년 협정이 ‘밀실 협정’ 이라는 국민들의 호된 비판과 질타속에 보류되었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피고발인도 한일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인 2012년 협정 보류 당시 밝혔

던 입장과 같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입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고 밝혔으며(중 제20호증 중앙일보 “박근혜 “한일정보협정 입기말 졸속처리 안돼” ”),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며,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 대상이 되고 2선 후퇴, 하야 또는 탄핵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상태에서 국가 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협정은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하고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책임 있게 수행되어야 할 이 사건 협정이 졸속으로 체결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사건 협정 체결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는 입장을 견지하며 졸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라. 민주주의 원리의 침해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원리는 헌법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협정 체결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민주적 정당성이 심히 의심되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피고발인은 2016년 9월경까지만 해도 이 사건 협정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하자는 일본

국방부장관의 재촉에 대해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증 제16호증, 증 제18호증 각 참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410, 증 제6호증)에도 나타나 있듯이, 피고발인은 2016. 10. 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고 대답하고, 2016. 10. 14.에도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 “여건 성숙이 필요” 하다고 답변하고도, 어떠한 사정 변화도 발생하지 않은 2016. 10. 27. 이 사건 협정의 재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 사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그야말로 ‘수사(rhetoric)’ 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일방적으로, 진지한 여론의 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북핵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는 당위만을 강조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MD 체계나 일본 안보 법제와는 무관하다’ 는 무성의한 주장만을 거듭하면서, 속전속결로 이 사건 협정의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협정의 가서명을 밀어붙인 2016. 11. 14.에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뒤집고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고 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증 제21호증 연합뉴스 “한민구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동의 전제조건이라 말한적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협정의 재추진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 대두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 7. 16.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 보면(증 제20호증 참조), 임기 말, 그것도 대형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2016. 11. 12.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명의 촛불 집회가 있는 직후에 이 사건 협정을 가서명한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5.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체결은 위헌적 조치임에도,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 체결을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이 피고발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과정은 위헌적이므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 1. 증 제1호증 조선일보, “반감 큰 韓日협정, 막판 허둥지둥 연기”
 - 1. 증 제2호증 국방부 2016. 10. 27. 보도자료
- 1. 증 제3호증 연합뉴스 “한민구 “日과 안보협력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
- 1. 증 제4호증 국방부 보도자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차 협의 결과”
- 1. 증 제5호증 뉴스1 “[종합]한·일, 9일 서울서 군사정보협정2차 실무협의”
 - 1. 증 제6호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 1. 증 제7호증 뉴스1 “한일, 내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속전속결’ 논란 불가피”

1. 증 제8호증의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영어
정본

1. 증 제8호증의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국문
본

1. 증 제9호증 CRS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
Cooperation and Opposition” (2013. 6. 24.)

1. 증 제10호증 주간동아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MD(미사일방어) 구축 사전
조치였다”

1. 증 제11호증 CRS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
Cooperation and Opposition” (2015. 4. 3.)

1. 증 제12호증 김종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 한일군사정보보호협
정은 세 번째 한반도 정벌을 위한 서곡”

1. 증 제13호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 ”

1. 증 제14호증 국민일보 “[한반도포커스-양무진] 한일 군사협정 논의 중단돼야”

1. 증 제15호증 파이낸셜뉴스 “정치 日대사 “한일 정보보호협정 언제든 체결 용의”

1. 증 제16호증 연합뉴스 “日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중요” ... 韓, “여건 조성돼야” (중
합)

1. 증 제17호증 세계일보 “2년여만에 마주한 한일 軍, 日 “정보보호협정 필요” 강력 요
청

1. 증 제18호증 연합뉴스 “日 방위상, 韓 국방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요청”

1. 증 제19호증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협정 ‘속전 속결’ 가서명에 美희망 반영됐다”

1. 증 제20호증 중앙일보 “박근혜 “한일정보협정 임기말 줄속처리 안돼” ”

1. 증 제21호증 연합뉴스 “한민구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동의 전제조건이라 말한적 없

다”

1. 증 제22호증 한겨레 “ ‘위키리크스’ 2년전 폭로전문에 이미 암시”

2016. 11.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 재 환

권 정 호

하 주 희

황 정 화

이 재 화

김 유 정

남 성 욱

김 종 귀

오 현 정

오 민 애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 진 형

법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방 서 은

변호사 김 인 숙

변호사 임 승 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